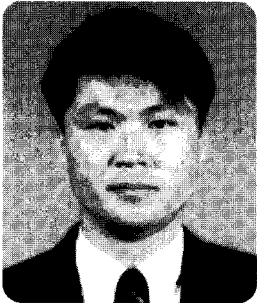


# 유럽의 특허침해 소송제도와 케이스(완)



정 연 응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 IV. 독일 侵害訴訟의 케이스

### 1. 本 發明의 紹介

1996. 6. 12. 유럽 의약회사인 스웨덴의 ASTRA사와 독일의 BYK-Gulden사(이하 BYKG사로 약칭함)간 위궤양 치료제에 대한 분야에서 특허소송의 화해가 있었다. 스웨덴의 ASTRA사가 백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ASTRA사의 주가는 급속히 추락하였고, BYKG사는 약 15%나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양회사의 이 같은 시장가격의 급변은 3조 마르크에 이르는 특허소송의 분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사안은 복잡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상기 사안들 중에서 비교적 덜 복잡한 사안 들을 선택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우리가 논의 할 사안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있었던 특허침해소송에 의한 최근의 결정을 보게 된다.

상기의 사안들 중 첫 번째는 카탈라아제(catalase; 과산화수소 분해효소제) 즉 콘택트렌즈에 부착된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매우 안정된 촉매에 관한 것이며, 수성 염화나트륨 용액내 카탈라아제의 용해에 의해 그 분해가 더 안정화될 수 있게 된다.

목 차

- I. 소개
- II. 이탈리아의 특허제도
- III. 유럽특허소송제도
- IV. 독일 침해소송의 케이스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 2. 本願의 請求範圍

EP공보 제0082798호의 특허권자가 보호범위로  
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청구범위 1, 3항에 대해서  
이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laim 1

1. Method for the disinfection and cleaning  
of contact lenses for the human eye,
2. in which method during an initial period  
a hydrogen peroxide solution is caused  
to act on the contact lens and then,
3. during a second, period the hydrogen  
peroxide adhering to and/or absorbed by  
the contact lens is split
4. under the action of a catalyst into  
water and oxygen, characterized in that
5. after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the  
hydrogen peroxide solution surrounding  
the contact lens
6. is replaced by a solution of sodium  
chloride corresponding to the  
concentration of the eye fluid and
7. containing catalase.

### Claim3

1. Use of a treatment liquid for the final  
cleaning of contact lenses
2. which have been subjected to a hygiene  
treatment
3. in a hydrogen peroxide solution,
4. which liquid comprises catalase
5. in a solution of sodium chloride

corresponding to the concentration of  
the eye fluid,

6. for the decomposition of the hydrogen  
peroxide adhering to and/or absorbed by  
contact lens into water and oxygen.

## 3. 事案의 背景

뒤셀도르프내 안경점에서 Ons Merk나  
Lensoclean이라는 명명하에 은밀하게 팔리고 있  
는 유사한 제품을 주지하여, 이 사안은 유명한 스  
위스의 화학회사인 Ciba-Geigy AG사(이하 시바  
사로 약칭)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획득한  
샘플이 뒤셀도르프법원의 관할하에서 팔리고 있음  
을 알고 획득한 증거물에 의해 바로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이것은 스페인의 Avizor사에 의해 제조  
된 물품이었다.

이 샘플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용액이 동일함을 찾아냈는데, 이 패키지내 제  
조자의 설명서에서 오염된 렌즈를 첫 번째 용액  
(Ons Merk 1과 Lensoclean 1)에 적셔야만하며,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간후에 첫 번째 용액은 두  
번째 용액(Ons Merk 2와 Lensoclean2)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

시바사는 두가지 용액을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용액은 물과 혼합한 3%의 과산화수소 용액이었  
으며, 두 번째 용액은 카탈라아제 용액의 강도는  
300mOsm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세한 특  
징과 더불어 시바사는 스페인 제조업자와 뒤셀도  
르프내 안경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  
다.

#### 4. 事案의 分析

상기 청구범위 제1항과 제3항을 보면, Avizor사와 뒤셀도르프내 안경점들은 당해물품을 팔 때 각각 하나의 방법(정확히 말해서 a process)과 하나의 이용(use claim)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Ons Merk와 Lensoclean사의 물품의 판매는 단지 각각의 용액을 포함한 두 병의 판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Ons Merk 1과 Lensoclean 1내에 오염된 콘택트렌즈를 적셔놓고, 일정한 시간이후에 Ons Merk 2와 Lensoclean 2용액에 의하여 제각기 상기 용액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Avizor사와 뒤셀도르프내 안경점들은 사실상 독일특허법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 프로세스의 판매에 대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제3자는 (침해로서), 이 법령의 관할내 이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청약하는 것이 (침해이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침해 프로세스를 분석해 본 결과, 상기의 청구범위 제1항에서는 6만이 일정한 차이가 나고,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상기의 청구범위 제3항에서는 5만이 차이가 난다.

즉, 청구범위 제1항의 제6은 다음과 같다.

6. is replaced by a solution consisting of 0.13% sodium chloride, 0.2% phosphate and 1.5-2% glycerol in water, which solution has a tonicity of 300 mOsm

또한 청구범위 제3항의 제5는 다음과 같다.

5. in a solution of 0.13% sodium chloride, 0.2% phosphate and 1.5-2% glycerol in water which solution has a tonicity of

300 mOsm

이상과 같이 침해물품과 상기 청구범위 제1, 3항의 주요부를 비교해 보면(제1항의 1-5, 7그리고 청구범위 제3항의 1-4, 6), 이들은 문언적으로 명백한 상호 대비가 되어 동일내지 유사성을 살피볼 수 있으며, 여기서 중점적으로 토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나머지 부분인 청구범위 제1항내 6과 청구범위 제3항내 5의 부분에 대한 문언적 그리고 균등적 침해여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ye fluid에 대한 농도가 당해특허와 침해물품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그 여부와 염화나트륨이나 그 용액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어느 관계를 점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균등론에 의한 침해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 5. 原告側의 主張

피고특허의 유효한 영역내 이용을 위해서는 Ons Merk사와 Lensoclean사의 렌즈 보조기구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염화나트륨 용액내에서 콘택트렌즈의 최종 세척을 위한 엔자임 카탈라이제를 포함한 치료용제가 동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염화나트륨용액의 농도에 관한 특징은 당해 용액내 염화나트륨의 특정한 농도에 대한 것이 아니며, 수성기질내 응하는 농도에 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논점은 수성기질의 농도에 따른 두 번째 치료 용제에 관한 것으로 귀착된다. 즉 일정한 等張性(isotonic)에 있다는 점이다.(等張性은 예를 들면 동등한 삼투압을 갖게 된다.)

#### 6. tonicity을 達成하는 方法

tonicity는 단지 염화나트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조성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인간의 수성기질은 약 0.9%염화나트륨의 용액에 따라 반응하며, 이에 따른 삼투압은 300mOsm정도가 된다. 전체적으로 염화나트륨용액의 tonicity는 당해 수성기질에 반응해야 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삼투압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되며, 소송상 당해 특허의 특징은, 해당 용액이 염화나트륨을 포함해야 하며, 일정한 삼투압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 중요한 관점은 아니나, 피고의 tonicity는 단지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성물 즉 glycerol이나 buffer salt등과 같은 조성물에 의해서 부가된 것이라는 점이다. 상기 청구범위제1,3항내 일정부분은 어떠한 균등물에 의해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glycerol은 염화나트륨과 상호 대비되어 유사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일한 기술적인 효과와 기술적인 기능의 관점을 갖게되는지 주목해야 한다.

우선일 시점에서 당업자는 글리세롤이 당해발명에 근거한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세심한 고려를 가져야 한다.

### 7. 被告側 主張

피고는 소송의 파기를 그 청구의 취지로 한다. 0.13%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가지고 사용되어진 염화나트륨 용액은 수성기질의 농도에 반응하는 염화나트륨 용액으로서 동일내지 유사로 명명될 수 없다. 반대로 실질적인 삼투압과 타 조성물

(tonicity 촉진제)의 부가에 반대되는 염화나트륨 농도는 본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용액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원특허의 명세서는 이를 위한 근거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다.

### 8. 法院의 判決

우선, 법원은 본원발명과 동일내지 유사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선행기술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하였다. 이들 과정을 통하여 법원은 본원발명의 목적이 상기에 서술된 방법(종래의 문제점인 선행기술2, 금속 카탈리스트)을 좀 더 개량시키는데 있었고, 그 문제의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의 불활성 반응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들 첫 번째 과정이후 일정한 시간후에는 오염된 과산화수소를 매우 높은 정도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본원발명의 상기 주제는 본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3항의 특징에 의해 기재되었으며, 본원발명의 장점을 몇가지 시사해주는 바, 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카탈라아제는 등장성 염화나트륨 용액내에서 이용이 되는 때, 놀라울정도로 온도에 대한 최소한의 감도로서 극도의 안정성을 증명되었다. 이러한 장점은 조직적 카탈라아제가 사용될 때, 매우 불안정하며 저장하기도 까다롭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는 특징점이다. 따라서 30%의 글리세롤과 10%의 에탄올이 용해된 고도로 농축된 카탈라아제는 4℃에서 보관한다면 몇 달간 선반에서 두어도 효능에는 이상이 없다.

### 9. 文言의 侵害

이들 청구범위는 두 번째 치료단계에서 카탈라

아제를 포함한 용액이 수성기질의 농도에 대해 반응하는 염화나트륨 용액인 것으로 작성되었다. 의학이나 약학에 대한 기술의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당업자라도 상기 설명으로부터 염화나트륨 용액이 수성기질로 등장성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등장성은 용액내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에 따라서 달성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 10. 當業者의 認知

따라서 0.9% 염화나트륨 용액은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생리학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용액이며, 등장성의 원형이 된다. 이것은 염화나트륨용액은 수성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되며, 등장 용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살펴보면, 당업자는 본원의 특징을 용액내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필요 함유량의 규정을 어느 만치 두었는가를 파악한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청구범위내 작성 내용(formation)에 도달하며, 상세한 설명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본원발명의 명세서에서 발견한다. “수성 기질의 농도에 다른 이 용액의 농도는 등장성을 그 예로 들수 있다.” “its concentration corresponds to the concentration of the aqueous humor, i.e. which is isotonic.”

### 11. 等張性과 염화나트륨

등장성이 염화나트륨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어떤 염화나트륨 함유량으로 용액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청구범위에서 염화나트륨 용액을 실질적으로 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외관적으로는 뚜렷한 이유를 살펴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명자는 당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청구범위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당업자가 다음사항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즉 카탈라아제가 등장성 위한 염화나트륨의 이용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0.9% 염화나트륨 용액으로서 카탈라아제에 안정된 영향을 미치며, 한편 이러한 효과를 갖는 하나의 단계가 본원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분야의 순수한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특별히 안정된 효과가 염화나트륨의 일정한 선택과 등장성을 위한 용액내 적용에 의해 표출된다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까지 인정받기는 힘들다. 그러나 출원인이 경험한 결과에 입각하여 (empirical results) 이를 정확히 표현한다면, 당업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명세서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로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피고는 당해특허내 염화나트륨 용액을 분류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On's Merk 2와 Lensoclean 2는 0.12-0.13%염화나트륨농도의 용액으로 구성되고, 이것은 가장 낮은 농도로서 기재되었던, 0.45%농도로 구성된 수성기질내 염화나트륨보다 훨씬 낮은 농도이다(물론 가장 높은 농도는 참고적으로 0.75%).

따라서 본원발명의 문언적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 12. 均等論에 의한 侵害

우선일의 시점에서 당업자가 전문가의 견지에서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구현하도록 사용된 개량된 수단을 여러 방면에서 고려

해본다. 우선, 피고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등장성과 관련되고 등장성의 촉진제로서의 buffer salts와 글리세롤을 이용한 결과로서 생리학상 비교될 만 한 용액 등과 상호 대비해 보면, 염화나트륨 용액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간주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당업자에 관한 기술적 균등에 도달하는 능력은 청구범위에 기술어지는 무계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확신한다.

등장성의 용액은 염화나트륨 용액 뿐만이 아니라, 당업자가 글리세롤 염화나트륨 buffer salts에 의해 등장성을 확신시키는 용액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성기질의 삼투압에 따른 용액으로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즉, 등장성에 대해서 당해발명의 염화나트륨용액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

그러나 특허 명세서에는 당업자가 다른 등장성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어떠한 시사점도 당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청구범위 제2항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로서의 염화나트륨 농도에 대한 정보를 당업자로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항은 오히려 청구범위 제1항에 맞추어 소금 농도의 정량적인 구체화와 설명일 뿐이다. 청구범위 제2, 3, 4항을 고려해보면, 당업자는 타 용액을 이용하여 안정된 효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발명자가 여타 다른 등장성 용액의 사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당업자는 염화나트륨 용액에 대해서 본원 발명의 특정 시사점으로부터 연역할 수 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시사점은 여기서의 염화나트륨 용액의 사용 결과로서 안정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본원 발명의 명세서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와 관련한 법령의 명확성에 대하여 EPC 제

69조와 특허법 제14조(1981)에 따르면,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할 때, 당업자의 관점에서 볼 경우의 균등물을 적용하여 특정한 물질을 선택하는 결과로서 당해청구범위내 기재, 즉 특정한 기술적 시사점으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지한다.

### 13. 客觀的 適用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를 살펴본다.

1. Aqueous catalase solution
2. containing one part by volume of a commercially available highly concentrated catalase solution and
3. 100 to 1000 parts by volume of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4. 0.1 to 2% of an inorganic salt of a group 1,2 or 3 metal

### 14. 文言的 侵害 解釋

우리가 잠재적으로 두가지의 침해 형태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성의 카탈라아제 용액과 구성요소 A를 만족하는 것이다. 구성요소 B는 아주 명쾌하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즉 Ciba-Geigy에 의해 수집된 분석 데이터는 이 의문을 명확하게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추정을 할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사안을 고려하여 두가지 잠재적인 침해의 형태를 결정 카탈라아제로부터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구성요소 B에 적용한 결과, 문언적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성요소 C를 적용하면, 대략 1g 카탈라아제에 따른 고도로 농축된 카탈라아제 용액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만하다는 것을 상기의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구성요소 C가 나타내는 부피는 청구된 용액이 대략 0.1에서 1wt.-%카탈라아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다른 한편, 이 두 잠재적인 침해 액체는 1.5-2wt.-%카탈라아제를 포함하고, 문언적 의미에서 구성요소 C를 만족할 수 없다.

끝으로 구성요소 D는 0.1에서 2%의 염분농도와 관련된다. On's Merk 2와 Lensoclean은 0.13% 염화나트륨과, 0.2% 염화 에스테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체의 0.33%인 무기 염기는 제1그룹의 구성요소이다.

상기의 결과로서 구성요소 A, D는 두가지 침해 형태로서 문언적 침해가 성립하고, 구성요소 B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만한 고도 농축된 카탈라아제 용액으로부터 잠재적인 침해형태가 내재되었다. 게다가 구성요소 C는 두가지 형태에 의해 구성요소 D에 따라서 0.1- 1%와는 반대로 1.5%에서 2%카탈라아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구성요소가 잠재적으로 두가지의 잠재적인 침해물품은 문언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15. 均等論에 의한 解釋

이 사안의 균등물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을 조사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것이다란 추정이 가능하다. 카탈라아제의 출처에 대하여 당업자가, 고도로 농축된 당해 용액이 청구범위내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이다. 상기 인용된 서술로부터 당업자는 고도로 농축된 당해 용액은 명백하게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라는 것을 우선일의 시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내 당해 용액의 포함은 기술적 암시나 함축보다는 오히려 실무적 고려사항의 결과에 따른 기재가 될 것이다. 당해 용액이 거의 순수한 카탈라아제(98wt.-%)이므로 왜 카탈라아제의 형태가 특히 최종물품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용액으로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하다. 이상의 사실로서 당업자는 순수한 형태내 카탈라아제나 다른 소스로부터 카탈라아제를 균등론에 의한 침해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법률의 확신에 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기재로서 함축이 되었을지라도 우선일의 시점에서 고도로 농축된 당해 용액의 형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입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너무 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당업자가 다른 소스로부터 이 카탈라아제로 만들 수 있으며 청구범위내에 기재된 바와 같은 농도로 증가시킬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과 특히 상기 서술된 바와 같이, 본래 카탈라아제는 결정체라는 인지를 강하게 부정(또는 긍정)하게 되는 논쟁의 실마리를 만드는 열쇠이다. 또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결정체 카탈라아제는 당업자에게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일단 이 카탈라아제가 선풍 입수가능하면, 이용되는 것 또한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독일법원은 구성요소 B에 균등론을 적용하여 두가지의 잠재적인 침해를 인지하게 된다.

두가지 잠재적인 침해의 형태에 따른 범위는 1.5에서 2로서 0.1에서 1에 이르는 구성요소 C와 수치적인 편차로부터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란 판

단을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치적인 범위에 관하여 독일법원은 법률을 명확하게 적용하며 매우 엄격하다.

이 때, 법원은 가장 근접한 범위내에서의 상대적인 편차와 청구된 범위내에서의 편차의 양쪽을 동시에 고려한다. 비에르클래르미텔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본원발명의 범위는 200부터 400까지이며(실제 사건에서의 단위는  $\mu\text{m}$ ), 가호의 범위중 본원발명에 가장 근접한 범위는 497이라는 수치였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본원발명에 대하여 균등론을 적용할 지에 대하여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타 발명과의 상대적인 편차인 25%[(497-200)/200]의 편차와 본원발명의 절대적인 편차 50%[200/400]를 비교해 보면, 균등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합금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0%의 편차를 균등하다는 영역내로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위의 균등론 적용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비추어 본다.

◆본원발명과 침해물품간 범위에 대한 균등론 판단 여부

0 0.1 1.0 1.5 2 [단위: %]

本願發明的 範圍

侵害 物品의 範圍

본원발명의 상위점으로부터 50%의 편차[(1.5-1.0)/1.0] 정도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듯이 균등하다고 간주할 수 없는 위치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안에서는 기술적인 과제에 대한 참작을 더욱 절실하게 적용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원발명은 카탈라

아제가 청구된 용액으로 하여금 놀라울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카탈라아제의 일정한 양은 염기용액의 일정한 양을 안정화시키는데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별히 당업자가 보기에, 당해 카탈라아제의 일정한 양은 매우 중요하며, 원천적으로 이 양의 증가에 의해 그 유리한 효과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즉 본원발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침해물품의 범위는 그 효과가 점차 작아지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데, 당업자는 당해발명의 최저 범위[0.1%]에서 시사하는 청구범위 그 자체로부터 당해 발명의 범위를 지지할 것이다(즉 '0.1%이상' 이 본원발명의 보호범위라는 관점). 결론적으로 침해물품의 범위가 그 효과면에서 본원발명보다 우세하거나 놀라울정도로 안정화된 용액을 만든다고 볼 수 없게 된다.

## 16. 結 論

이상으로 이 사안으로부터 두가지 점을 배울 수 있다. 첫째로, 명세서 작성시에 침해가 예상되는 그 범위를 상세한 설명내에 출원당시부터 기재후 제출하도록 주의한다. 둘째로 수치적인 범위가 선행기술의 청구범위내 포함이 될 때, 최소한 출원 단계시점에서 다른 놀라울정도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출원하고자 하는 범위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여 그 범위가 지지받을 수 있도록 명세서를 기재한다. **발특 9809**